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나434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나4341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가소36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2. 1. 13.

판결 선고 2022. 2. 17.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가소36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1)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8. 4. 16. 원고에게 카드단말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카드단말기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총판대리점 운영권을 피고가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와 그 총판대리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함께 운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손실을 본 것일 뿐, 원고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오천석

판사 김영환

판사 조진용

1) 항소장 항소취지 2항의 "소장부분 송달일부터"는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오기로 본다.